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2314
등록일자	2015.2.5.
결재일자	2015.2.5.
공개구분	부분공개(6)

주무관	민방위팀장	자치행정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
서범식	전동중	최선희	이경현	전결 02/05 조인동	
협 조					

#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

서대문구  
자치행정과

#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

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재난에 대한 예방·대응·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고자 함

## I 교육 개요

### 1. 법적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
-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
-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계획)
-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-1230(2015.1.23.)호 「2015년 민방위 교육 운영 지침」

### 2. 교육시간

교육연차	교육시간	교육방법	교육내용
1년차	4시간	집합교육	기본교육(2시간)+실전훈련(2시간)
2~4년차	4시간	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	기본교육(1~2시간)+실전훈련(2~3시간)
5년차 이상	1시간	비상소집훈련,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	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
※ 3~4년차 대원 :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(4시간 이내 지자체 자율실시)			

### 3. 교육대상

-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
  - 통리 민방위대 대원대장,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대장, 직장 민방위대 대원대장

#### 4. 교육내용

- 기본교육 : 민방위 제도 및 운영,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, 최근 북한 및 주변국 정세, 국가역사관, 재난안전 등
- 실전훈련 :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
  - 상황전파, 대피통제, 화생방, 인명구조, 소화, 응급복구
  - 지역별 대피시설, 급수시설, 민방공 경보 식별요령 교육
  -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
    - 상황전파, 대피통제, 화생방, 인명구조, 소화, 응급복구
    - 지역별 대피시설, 급수시설, 민방공 경보 식별요령 교육

## II 교육 실시

### 1. 민방위교육훈련

- 기 간 : 2015. 3 ~ 11월
  - 기본교육 : 2015. 3 ~ 6월 (상반기)
  - 보충교육 : 2015. 9 ~ 11월 (하반기)
- 대 상 : 20,958명(만20~40세 민방위대원)
- 소요예산 : 46,950천원(국비 6,714, 시비 7,833, 구비 32,403)
  - 민방위 실기교육·안보교육 강사료, 통대장·기술지원대 교육비
- 교육훈련 : 대상별 교육일정은 추후 수립예정

대상		교육	교육시간	장소	내용
가. 민방위대원 (지역·직장)	1년차	집합교육	4시간	서대문 문화회관	기본교육, 실전훈련
	2~4년차	집합교육	4시간	서대문 문화회관	기본교육, 실전훈련
	5년차이상	집합교육	1시간	관내학교	비상시행동요령 등
나. 민방위대장(지역·직장)		집합교육	4시간	서대문 문화회관	기본교육, 실전훈련
다. 기술지원대		집합교육	4시간	서대문 문화회관	기본교육, 실전훈련
라. 민방위담당자(지역·직장)		집합교육	4시간	구청5층 전산교육장	교육지침, 실무

## 가. 민방위대원 교육

### ○ 교육1년차 : 집합교육

- 대 상 : 2,045명(지역·직장 민방위대원)
  - 집합교육의 경우 2~4년차대원과 구분하여 실시
- 종 류 : 기본교육, 1차보충교육, 2차보충교육
- 시 기 : 상반기 기본교육, 하반기 보충교육
- 시 간 : 1일 4시간(기본교육 및 실전훈련)
- 교육인원 : 150명 이내(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인원제한)
- 교육내용 및 방법

구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방법
기본교육	소양과목(안보, 민방위제도 등)	2시간	이론
실전훈련	응급처치(심폐소생술 등)	2시간	실습

※ 교육종료후 설문조사(강의 및 강사 평가) 실시

### ○ 교육 2~4년차 : 집합교육

- 대 상 : 7,220명(지역·직장 민방위대원)
- 종 류 : 기본교육, 1차보충교육, 2차보충교육
- 시 기 : 상반기 기본교육, 하반기 보충교육
- 시 간 : 1일 4시간(기본교육 및 실전훈련)
- 교육인원 : 150명 이내(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인원제한)
- 교육내용 및 방법

구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방법
기본교육	소양과목(안보, 서대문지역사, 금연대사 증후군 등 건강관리)	2시간	이론
실전훈련	응급처치 등 실전훈련	2시간	실습

※ 교육종료후 설문조사(강의 및 강사 평가) 실시

### ○ 교육 5년차이상 : 비상소집훈련

- 대 상 : 11,693명(지역·직장 민방위대원)
- 종 류 : 비상소집훈련, 1차비상소집훈련, 2차비상소집훈련
- 시 기 : 상반기 기본교육, 하반기 보충교육
- 시 간 : 연 1회, 1시간

- 교육내용 및 방법

구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방법
기본교육	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	1시간	이론+실습 등

- 훈련방법

-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사전에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
- 학교운동장 등 동별 장소선정
-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·장소(주소지)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(체류지)의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가능

- 중점점검사항

- 출석확인(대리출석 금지) 및 편성임무 확인(민방위대 임무교육 철저)
-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및 대피요령
-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및 전시(비상사태 발생시) 국민행동요령
- 지역민방위대 : 동장 주관으로 통대별 훈련 통제 및 실시
- 직장민방위대 : 자체 대피방법, 조직역량 강화 등 직원교육 실시

나. 민방위대장 교육

○ 지역민방위통대장, 직장민방위대장 : 집합교육

- 대 상 : 373명
- 종 류 : 기본교육, 1차보충교육, 2차보충교육
- 시 기 : 통대장-창설기념식, 직장대장-직장대교육 시 병행실시
- 시 간 : 1일 4시간(기본교육, 실전훈련)
- 교육내용 및 방법

구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방법
기본교육	소양과목(안보, 서대문지역사, 가정생활)	2시간	이론
실전훈련	민방위 대장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	2시간	실습

다. 기술지원대 교육

○ 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: 집합교육

- 대 상 : 128명
- 종 류 : 기본교육, 1차보충교육, 2차보충교육

- 시 기 : 상반기 기본교육, 하반기 보충교육
- 시 간 : 1일 4시간(기본교육, 실전훈련)
- 교육내용 및 방법

구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방법
기본교육	소양과목(안보, 지진 등)	2시간	이론
실전훈련	전문기술교육(화생방, 응급처치 등)	2시간	실습

#### 라. 민방위담당자 교육

- 동주민센터 및 직장 민방위대 담당자 : 집합교육
  - 대 상 : 53명(동 14명, 직장 39명)
  - 일 시 : 2015. 3월초
  - 장 소 : 구청 5층 전산교육장
  - 교육내용 및 방법

구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방법
기본교육	-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관리 - 서울행정포털 민방위 시스템교육	2시간	실습

### 2. 생활민방위 교육

- 기 간 : 2015. 3 ~ 11월중
- 대 상 : 관내 초중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
  - 학 교 : 7개학교(초등학교 4개, 중학교 3개)
  - 주 민 : 2,000여명(청소년, 노인, 여성, 다문화가정 등 구민)
- 장 소 : 서대문문화회관 또는 지정장소
- 교육신청 : 서대문구 홈페이지(유선신청 가능) 및 공문 신청
- 소요예산 : 1,700천원
- 교육내용 및 방법
  - 내 용 : 응급처치, 화재, 교통안전, 승강기 안전 등 생활관련과 지진, 태풍, 홍수 등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재해시 대처요령
  - 방 법 : 다양한 사고, 재난, 재해 등 실제 사례(실습)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캠프 방문교육 실시

### III 교육 운영

#### 1. 교육운영절차

■ 국민안전처 2015년 교육지침시달 → 서울시 → 자치구 세부교육훈련 수립  
 →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→ 교육실시 → 교육참석·불참자 정리 → 교육실시  
 결과 서울행정시스템 입력·보고

연간 교육계획 수립·시달  
 (1월중)

▶ 국민안전처 → 서울시 → 자치구



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·보고  
 (1~2월중)

▶ 자치구 → 서울시 → 국민안전처  
 \* 강사 교육 및 담당자 연수 등 추진  
 ▶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



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
 .본 교육 : 교육실시 7일전까지  
 .보충교육 :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

▶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, 교육안내 등



상반기 교육 실시  
 (3~6월)

▶ 상반기 : 집합교육비상소집훈련(본교육)  
 ▶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



상반기 결산 보고  
 (7.20일까지)

▶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



하반기 교육실시  
 (8~11월)

▶ 하반기 : 집합교육비상소집훈련(보충교육)  
 \*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 
 ▶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



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 
 서울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
 (12.31일까지)

▶ 과태료 부과, 주민등록 정리 등  
 ▶ 동 → 자치구 → 서울시 → 국민안전처



교육결산 보고  
 ( '16. 1. 20일까지)

▶ 총평, 문제점 등 종합 분석, 통계관리  
 ▶ 동 → 자치구 → 서울시 → 국민안전처

## 2. 교육면제 및 유예자 관리

### ■ 교육면제

#### ○ 관련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

#### ○ 면제대상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
-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
-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·응급대책·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
- 의료·전기·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
-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

#### ○ 조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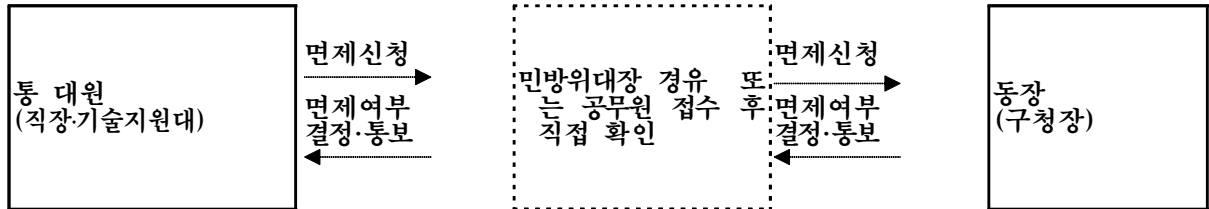
-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(별지 제22호 서식)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(기술, 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)에게 제출
  - 재소증명,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, 자격증사본, 유예사유존속증명 등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

-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전자정부법 제42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
  - ※ 전자정부법 78조(과태료)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(‘10.11.18. 시행)
  - 다만,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
- <관련법령>
  - 전자정부법 제42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①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(생략)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- ② 4.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 -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9조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① 법42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1.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



## ○ 면제절차



- 면제사유 소멸신고 : 7일 이내 구두신고
-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(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거쳐 면제여부 결정통보 처리)

## ○ 유의사항

-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
-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교육연차가 상향 조정
-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

##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/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인정

- 인정대상 : 2년차 이상부터 가능
  -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
  - 설해대책, 한해대책,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, 구제역 등 재난 예방·봉사활동 참여 대원 (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)
  - \*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,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·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
- 인정내용 : 연 4시간 이내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인정
- 인정절차 : 본인 또는 관련기관·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→ 관련서류 확인 → 구청장 또는 동장 내부결재(교육면제 승인) → 새울행정시스템 입력
- 유의사항 :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, 헌혈 참여대원, 운전자보수교육, 전기가스·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
  -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참여자도 동일 처리
  -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,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

## ■ 교육유예

### ○ 관련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(제26조 제3항 준용), 같은법 시행령 제30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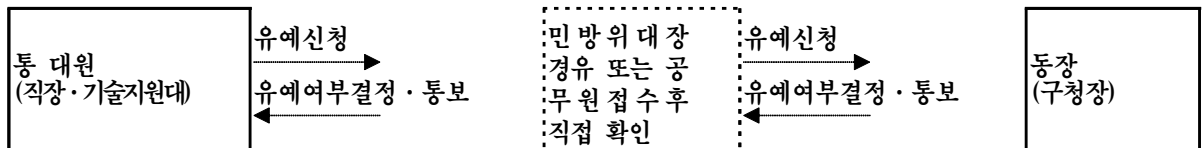
### ○ 유예대상

-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
-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
  - 3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,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, 개성공단 근무,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

### ○ 조치방법

-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서(별지 제22호 서식) 및 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(기술,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)에게 제출

### ○ 유예절차



- 유예신청 첨부서류 : 의사, 통대장, 관계기관장 확인
-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

## IV 중점추진사항

### ■ 민방위 교육개선으로 내실있고 호응도 높은 민방위교육 구현

#### ○ 민방위대원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목 채택

- 1년차 : 안보교육, 민방위제도 및 임무고지, 응급처치(심폐소생술 등)
- 2~4년차 : 안보교육, 건강관리(금연, 대사증후군 등), 서대문지역사, 응급처치(심폐소생술 등)

※ 의약과 사업과 연계하여 의무팀 직원을 강사로 활용

☞ 예산절감된 강사비로 교육시작 10분전 문화공연 실시

-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이벤트 실시
  - 음악공연 등 문화이벤트 실시하여 민방위훈련 참여 호응도 제고
- “지루한 교육” → “재미있고 유익한 교육” 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
  - 민방위대원에게 지루하고 무의미한 교육으로 인식으로 교육 참여도 저조
  -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욕구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강좌도입으로 즐겁고 유익한 민방위 교육 실시
-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「민방위 강사평가제」 실시
  - 교육종료후 민방위 대원들로부터 강사에 대하여 전문성, 만족도, 강의 기법 등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실시
  - 평가점수 70점이하 및 강의 민원 3회이상 발생시 강사에 대한 강사퇴출제 실시로 고품질 강의를 이끌어내 교육만족도 향상 기여
-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을 제고를 위한 “교육훈련 안내 문자서비스” 추진
  - 민방위교육훈련 5일전 민방위대원에게 훈련통지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

## V 행정 및 협조사항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■ 통지서 양식 인쇄 및 교보재 확보 등 교육훈련 준비 | : | 자치행정과 |
| ■ 소집훈련시 방송장비(마이크, 스피커 등) 지원    | : | 행정지원과 |
| ■ 민방위기본교육 훈련전 구정홍보 영상 준비       | : | 홍보과   |
| ■ 소집훈련 장소 확보 및 교육장 인원·차량 통제 철저 | : | 동주민센터 |
| ■ 민방위교육 휴식시간 구정홍보 자료 제출        | : | 전부서   |

- 첨부 1. 2015년 위촉 강사현황 1부
2. 2015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일정 1부
3. 2015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일정 1부
4. 2015년 민방위교육훈련 연간일정표(예정) 1부. 끝.